

**환경부
보도자료**

2005년 2월 7일 석간부터 보도해 주십시오

- ☐ '05. 2. 4 배포
- ☐ 사진 없음
- ☐ 총 6쪽

대기보전국
교통환경
기획과

김상배 과 장
이형섭 사무관 (메일)

전화

02-2110-6807
getthere@me.go.kr

2. 환경부, 2005년도 수도권 저공해자동차 보급기준 고시

- ◇ 자동차 제작사 및 수입사가 판매할 비율을 버스는 12%, 그 외 차종은 1.3%로 정함
- ◇ 르노삼성, GM대우, 현대, 기아, 쌍용, 대우버스, 타타대우, 스카니아 등 8개사가 해당

- ☐ 환경부는 '05.2.7일 자동차제작사 및 수입사가 금년 한해 수도권 지역에 판매하여야 할 저공해자동차 보급비율을 버스는 12%로, 그 외 차종의 경우에는 1.3%로 정해 고시하였다.
 - 이러한 비율은 모든 저공해자동차를 무공해 전기자동차로 판매할 경우로 가정해서 정한 것으로 실제 판매되는 저공해자동차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각각 33.8%와 4.3%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.
 - 금년에 자동차회사가 고시에 따른 보급기준을 달성하는 경우 버스는 약 1,400대, 승용차는 약 26,000대의 저공해자동차가 수도권지역에 보급될 것으로 기대된다.
- ☐ 이 고시는 환경부가 수도권 대기질을 10년내 OECD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한다는 목표아래 제정하여 시행중인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고 있다.

- 동법에서는 수도권지역(서울, 인천, 경기지역 24개시)에 3,000대 이상의 자동차(차량중량 3.5톤 이상은 300대 이상)를 공급하는 제작·수입사에게 일정비율 이상은 저공해자동차로 제작·판매하도록 하고 있으며, 그 구체적인 비율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.
- 이러한 저공해자동차 보급 부담을 지는 자동차회사는 국내 자동차 제작사 모두와 수입사의 경우는 스카니아만 해당된다.
- 한편, 환경부는 수도권 대기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2014년까지 자동차부문에서 약 14만톤(총 50만톤)의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,
- 저공해자동차 보급정책을 통해서는 총 16,000톤을 줄일 계획이고 2005년도에는 1,600톤의 오염물질 삭감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.

〈참고자료〉

붙임 : 「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기준」 설명자료

〈붙임〉

연간저공해자동차 보급기준 설명자료

1. 「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」 관련규정

○ 자동차제작사가 대기관리권역내에서 보급하여야 할 「연간저공해 자동차보급기준」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매년 고시(법 제23조)

- 제작사는 보급기준에 따라 매년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를 제출(보급기준 고시후 3개월 이내)하고 환경부는 이를 승인

- 또한, 제작사는 승인을 얻은 보급계획서에 따라 저공해자동차를 보급하고 그 실적을 제출(매년 3월말까지)

※ 대기관리권역 : 서울, 인천(옹진군 제외), 경기지역중 연천군, 포천시, 가평군, 양평군, 광주시, 여주군, 안성시를 제외한 24개 시군

○ 적용대상 : 최근 3년간 연평균 판매수량이 3,000대(3.5톤 이상 차량의 경우 300대) 이상인 제작·수입자(시행령 제26조)

※ 이에 해당하는 국내 제작·수입업자는 현대, 기아, 르노삼성, GM대우, 쌍용, 대우버스, 타타대우, 스카니아 등 8개사임

2. 보급기준

□ 적용방법

○ 대기관리권역내 전체 자동차 판매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수도권 특별법상의 제1종 내지 제3종 저공해차로 보급하도록 함

※ 제1종 : 전기자동차, 제2종 : 가스 및 하이브리드자동차, 제3종 : 차기 기준 만족 가스·휘발유·경유자동차

○ 보급비율은 승용4(버스)와 그 외 차종의 2개 그룹으로 나누어 차등 설정

- 기존의 CNG버스 보급사업으로 인해 승용4의 저공해자동차 생산 계획이 월등하므로 이를 고려

그룹 1 : 경자동차, 차량 총중량 3.5톤미만 승용차, 화물차

그룹 2 : 차량 총중량 3.5톤이상 승용차(버스)

□ 산정방법

$$\text{보급비율}(\%) = \frac{\text{저공해자동차 판매대수} \times \text{저공해자동차 환산비율}}{\text{대기관리권역내 최근3년간 연평균 자동차 판매대수}} \times 100$$

○ 저공해자동차 친환경성 정도에 따른 가중치 차등 부여

- 가중치 부여방법은 수도권특별법상의 「저공해자동차 구매비율 환산방법」을 준용하여 저공해자동차 종류별로 환산비율을 적용

〈저공해자동차 종류별 환산비율〉

저공해자동차 구분	사용연료	환산비율
제1종 저공해 자동차	-	1
제2종 저공해 자동차	CNG, LPG	0.5
	하이브리드	0.4
제3종 저공해 자동차	휘발유, CNG, LPG, 경유	0.3

<보급비율 산정방법 사례>

- '02~'04년도 대기관리권역내 연평균 자동차 판매량 : 100,000대
- 제2종 하이브리드 : 500대 판매
- 제3종 휘발유 : 4,000대 판매
- 제3종 LPG : 1,000대 판매

$$\text{☞ 보급비율} = \frac{500 \times 0.4 + 4,000 \times 0.3 + 1,000 \times 0.3}{100,000} \times 100 = 1.7\%$$

□ 보급비율

<'05년도 저공해자동차 보급비율>

◆ 그룹1(경자동차, 중·소형 승용차, 화물차) :

'02~'04년 수도권내 해당 차종군 연평균 판매량의 1.3%

※ 환산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절대 판매대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 : 4.3%

◆ 그룹2(버스) : '02~'04년 수도권내 해당 차종 연평균 판매량의 12%

※ 환산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절대 판매대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 : 33.8%

○ 그룹1의 경우 수도권 대기개선 특별대책상의 오염물질 삭감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저공해자동차 보급수준으로 결정

- '05년도 삭감목표량 : 1,660톤('2014년도까지 10년간 저공해 자동차 보급정책을 통한 오염물질 삭감계획량의 10%)

- 저공해자동차의 오염물질 삭감량 : 64kg/대(휘발유승용차 기준)

☞ 동 삭감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저공해자동차 보급대수 : 25,937대

- 수도권 지역내 연간 자동차판매량 : 약 600,000대

☞ 제3종 저공해자동차를 기준으로 한 필요 보급비율 : 1.29%

- 그룹2의 경우 '05년도 CNG버스 보급계획을 반영하여 결정
 - '02~'04년도 수도권내 해당차종(승용4) 평균 판매량 : 4,249대
 - '05년도 수도권내 CNG버스 보급계획 : 1,437대
- ☞ 동 보급계획 달성을 위한 '05년 예상 보급비율 : 11.5%
(제2종 CNG버스가 제3종 CNG버스의 25% 수준임을 고려)
- ※ 자동차제작사 관계자회의('04.12.28) 및 의견수렴을 통해, 모든 제작·수입사와 상기 보급비율에 합의

3. 잉여분의 이월 및 할증

- 보급비율 초과달성시 잉여분의 이월을 허용하여 초과달성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저공해자동차 조기보급을 유도
 - 잉여분에 대하여 다음해에 100% 인정하도록 하고 다음다음해부터 50%의 할인율을 적용
- 부족분의 경우 해마다 20%의 비율로 할증되도록 하여 보급기준 달성을 독려

4. 향후 계획

☐ 중장기적 저공해자동차 보급기준 제시

- 저공해자동차 보급정책의 로드맵에 맞춰 자동차제작사가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'06년 이후의 보급비율은 중장기적(5년 단위 예상)으로 제시
 - 연구용역을 통해 중장기적 저공해자동차 보급기준 도출